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273
----------	-------

발의연월일 : 2026. 3. 6.

발 의 자 : 주진우 · 정동만 · 엄태영
이종욱 · 곽규택 · 이인선
박준태 · 김도읍 · 김성원
박정훈 · 김정재 · 우재준
안철수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 각 분야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표명하면서, 특히 고용 · 교육 · 복지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취약계층 청년”으로 정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청년의 교육 및 취업 활동에 있어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거주 지역에 따른 사회 · 경제적 여건의 차이가 청년정책의 접근성과 수혜 수준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음. 또한 사회적 · 문화적 환경의 급변으로 인해 다층적 ·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원 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기본이념에 청년의 거주 지역에 따른 여건 차이로

인하여 불합리한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고 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는 한편,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여 청년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3호, 제3조제5호 등).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등에서 청년의”를 “등에서 거주 지역 등에 따른 여건의 차이로 인하여 불합리한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년에 대한”으로 한다.

제3조제5호 중 “청년을”을 “청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청년을”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년

나. 가족 구성원의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하여 일상적인 돌봄이나 간병을 제공하고 있어 학업, 취업 또는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는 청년

다. 사회적·심리적 요인 등으로 인해 장기간 집 등 한정된 공간에 고립 또는 은둔 상태에 있어 학업, 취업 등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청년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여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제4조제3항 중 “마련하여야”를 “마련하여야 하며, 특히 지역 간 여건의 차이로 인한 기회 접근의 불균형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기본이념) ① (생략)	제2조(기본이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u>청년의</u> 평등한 기회 제공	3. -----등에서 <u>거주 지역 등에 따른 여건의 차이로 인하여 불합리한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년에 대한</u>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u>청년을</u> 말한다.	5. ----- <u>청년으로서</u> 다음 각 목의 청년을-----.
<신설>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년
<신설>	나. 가족 구성원의 질병, 장

<신 설>

<신 설>

6.·7. (생 략)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무) ①·② (생 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
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
다.

애, 노령 등으로 인하여
일상적인 돌봄이나 간병을
제공하고 있어 학업, 취업
또는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는 청년

다. 사회적·심리적 요인 등
으로 인해 장기간 집 등
한정된 공간에 고립 또는
은둔 상태에 있어 학업,
취업 등 사회활동에 참여
하지 못하는 청년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
지에 준하여 고용·교육·
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
움을 겪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년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청년

6.·7. (현행과 같음)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마련하여야 하
며, 특히 지역 간 여건의 차이
로 인한 기회 접근의 불균형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④ ~ ⑥ (생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